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1197
----------	------

제출년월일 : 2007년 11월 일
제출자 : 제천시장

1. 제안이유

참전유공자들의 숭고한 애국애족 정신을 되살리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 유공자들의 명예 선양을 위하여 참전명예수당 지급 등에 관한 지원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코자 함.

2. 주요내용

- 참전유공자(6·25참전 및 월남참전 용사/ 지급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에게 월 2만원의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함
- 참전유공자 호국정신 계승 및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함.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 붙임

- 첨부 1. 관계법령 1부.
 2. 입법예고 사본 1부.
 3. 제천시 참전유공자 일반현황 1부.
 4. 시군별 참전용사 지원조례 제정 현황 1부.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참전유공자는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된 군인
2.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자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3.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4.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5.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제3조(지원사업)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전유공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1. 참전유공자에게 월 2만원의 참전명예수당 지급
2.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자) ①지원대상자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지급일 현재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법 제3조제2항에 의거 참전유공자 지원에서 제외된 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7호·제8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상금 또는 수당을 받는 자.
3.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받는 자.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참전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고,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시에는 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③ 참전명예수당은 지급결정이 있는 달이 속한 분기의 다음달 10일 이내에, 그리고 이후 매분기 다음달 10일 이내에 수령인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다만, 수령인이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신청서는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에 대하여는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의거 신청서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는 매년 1월 중에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개인 또는 관련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대하여 제3조에 의한 지급 부적격자가 있는지 여부를 지방보훈청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사항 변경) ① 제5조제1항에 의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신고하여야 한다.

1. 주소가 변경된 때

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다음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청인 또는 관련단체에 통보한다.

1. 명예수당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2. 잘못 지급된 명예수당의 환수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참전등록번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예금 계좌	금융기관명				예금 종류										
	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p>「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p>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 5px;">구비서류</td> <td style="padding: 5px; text-align: right;">수수료</td> </tr> <tr> <td colspan="2" style="padding: 5px;"> [지급신청] 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td> </tr> <tr> <td colspan="2" style="padding: 5px;"> [변경신고] 1.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td> </tr> </table>										구비서류	수수료	[지급신청] 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변경신고] 1.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수수료														
[지급신청] 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변경신고] 1.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없음															

관계법령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1.3 법률 제8230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2002.1.26, 2005.3.31, 2007.1.3>

1. "6·25전쟁"이라 함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전투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2. "참전유공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한다.
 - 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된 군인
 -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 다.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 라.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제3조(적용대상<개정 2002.1.26>) ①이 법의 적용대상자는 전유공자로 한다.

<신설 2002.1.26>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6, 2007.1.3>

1. 「국가보안법」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3.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자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다시 받아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1.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이 제외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확인 등을 위하여 전파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에 범죄경력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2.1.26>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6·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사업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7.3.22 대통령령 제19951호]

제2조(법적용배제 대상범죄 등) ①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개정 2005.6.10, 2006.1.13>

1. 「형법」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가. 제250조 내지 제253조의 죄 및 그 미수죄

나. 제287조 내지 제289조, 제292조(제287조 내지 제28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93조의 죄 및 그 미수죄

다. 제297조 내지 제303조 및 제305조의 죄

라. 제333조 내지 제339조의 죄 및 그 미수죄. 다만, 미수죄는 제337조의 경우에는 상해에 이르게 한 때를, 제338조의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게 한 때를 제외한다.

마. 제351조(제347조, 제348조의 상습범에 한한다)의 죄 및 그 미수죄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의 죄 및 그 미수죄

3.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내지 제10조의 죄 및 그 미수죄

② 법 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품위손상행위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참전유공자의 신분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혜택을 강요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2. 폭행·협박 또는 기물파손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제7조(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 법 제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금액은 월 7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4.1.17, 2006.1.13>[적용 2006.1.1부터]

- 제11조(장제보조비) ①법 제9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장제보조비의 지급금액은 15만원으로 한다.
- ②장제보조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국가보훈처장에게 장제보조비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6.10, 2006.1.13>
- ③제8조의 규정은 장제보조비의 지급방법·지급절차 등 그 지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7.27 법률 제8566호], 시행일 2008.7.28,

제4조(적용대상 국가유공자)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개정 1988.12.31, 1991.12.27, 1993.12.31, 1994.12.31, 1999.8.31, 2000.12.30, 2002.1.26, 2005.7.29>

1. 순국선열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국선열
2. 애국지사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애국지사
3. 전몰군경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 나.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를 포함한다)
4. 전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역한 자(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5. 순직군경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군경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
(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 나. 군인 또는 군경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역한 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6. 공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역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7. 무공수훈자 : 무공훈장을 받은 자
- 7의 2. 보국수훈자 : 보국훈장을 받은 자
8.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국에 거주하던 자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까지의 사이에 국군 또는 국제연합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사변에 참전하고 제대된 자 (파면 또는 형의 선고를 받고 제대된 자를 제외한다)
9. 4·19혁명사망자 :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자
10. 4·19혁명부상자 :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 10의 2. 4·19혁명공로자 :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자 중 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건국포장을 받은 자
11. 순직공무원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군인 및 경찰공무원을 제외한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 나.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을 제외한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목에서 같다)를 입고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12. 공상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을 제외한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13.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자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된 자
14.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상이자(이하 "특별공로 상이자"라 한다) :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된 자
15.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중 제13호 및 제1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된 자
-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6>
- 제1항제3호 가목 :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
 - 제1항제3호 나목 및 제4호 :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3. 제1항제5호 가목 :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4. 제1항제5호 나목 및 제6호 :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입은 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5. 제1항제11호 가목 :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6. 제1항제11호 나목 및 제12호 :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입은 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③ 삭제 <2002.1.26>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순국선열·애국지사의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신설 1994.12.31>

⑤ 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제11호 또는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이를 제외한다. <신설 2002.1.26>

1.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불가피한 사유없이 관련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4.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

제천시 공고 제 2007 - 1474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7. 10 . 25.

제 천 시 장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조례명 :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 참전유공자들의 숭고한 애국애족 정신을 되살리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 유공자들의 명예 선양을 위하여 참전명예수당 지급 등에 관한 지원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코자함.

3. 주요내용

- 참전유공자(6·25참전 및 월남참전 용사/ 조례 공포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에게 월 2만원의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함
- 참전유공자 호국정신 계승 및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함.
- 조례안: 별도붙임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11월14일 까지 제천시장 (참조 자치운영팀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5464, FAX 641-5469 담당자 : 임정호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기타 참고 사항 등

제천시 참전유공자 일반현황

□ 관련단체 및 인원(보훈청 등록인원)

구 분	등록 인원	비고
6·25참전유공자	1,138명	
월남참전 유공자	491명	
6·25 및 월남참전 유공자	6명	
계	1,635명	

□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적용 대상 인원: 991명

○ 총 인원: 1,635명

- 65세 미만 인원: 484명
- 이중지원 인원: 160

○ 적용대상 인원: 991명

□ 현재까지의 지원내역(보훈청 지급)

※ 보훈청 지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 6·25참전유공자: 월 70,000원(65세 이상)
- 월남참전 유공자: 월 70,000원(65세 이상)

※ 제천시 지원 - 「사회단체 보조금」 및 「민간경상보조」

- 사회단체보조금 5,400천원<6·25참전유공자회>
- 유해발굴사업 6,000천원<6·25참전유공자회>
- 6·25참전유공 기념조형물 건립 96,000천원<6·25참전유공자회>
- 총 107,400천원 지원 / 2007년

시군별 참전용사 지원조례 제정 현황

시군별	제정일시	지원대상	지원내역		제외대상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충주시	2007.05.31.	6.25 /월남	10,000	-	국가유공자
거창군	2006.02.14.	6.25	10,000	150,000	국가유공자
서산시	2006.11.20.	6.25 /월남	10,000	150,000	국가유공자
여수시	2006.11.21.	6.25 /월남	20,000	150,000	국가유공자
칠곡군	2007.02.27.	6.25 /월남	20,000	150,000	국가유공자
연기군	2007.01.10.	6.25 /월남	50,000	-	국가유공자
광양시	2007.02.07.	6.25 /월남	20,000	150,000	국가유공자
순천시	2007.03.30.	6.25 /월남	20,000	150,000	국가유공자
완도군	2007.05.22.	6.25 /월남	20,000	150,000	국가유공자
거제시	2007.05.25.	6.25	10,000	150,000	국가유공자
속초시	2007.07.10.	6.25 /월남	10,000	150,000	국가유공자
강진군	2007.07.12.	6.25 /월남	20,000	150,000	국가유공자